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74

발의연월일: 2022. 6. 28.

발 의 자:김경협·김민철·김병기

김병욱 · 김병주 · 김영배

김정호 · 김주영 · 김한정

정성호・최강욱・최기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「국가정보원법」에서 위임한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.

최근 「국가정보원법」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5항 중 "제4조제3항"을 "제4조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사무국의 설치) ① ~ ④	제11조(사무국의 설치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	⑤
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	
에 따른 결격사유와 「국가정	
보원법」 <u>제4조제3항</u> 의 위임에	<u>제4조제4항</u>
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	
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	
한다.	
⑥·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